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897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8978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31 선고 2023가단9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 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31. 선고 2023가단94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6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18. 1. 8.자 30,000,000원은 피고의 요구로 C에게 즉시 송금하였고, 2018. 2. 12.자 40,000,000원은 광주시 D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투자금으로 받아 위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각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고, 2018. 2. 26.자 250,000,000원만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위 각 돈이 대여금일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3. 6.자 315,000,000원 중 65,000,000원이 이자 명목의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경진

판사김용태